

독일사례

인용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함부르크 고등법원 1982년 11월 25일 판결
3 U 180/82 사건

<적용법조>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어떤 보도에서 인용되기 만한 제삼자의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그 정정 보도문이 편집자 자신의 주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에게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개요>

쌍방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에 관해서 다투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로 된 것은 정정보도문에서 다시 인용되는 첫번째 보도문은, 편집자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인용문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우선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이 내려 졌는바, 그 후 피신청인의 이의에 기하여 위 가처분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판결이유>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고, 이유를 붙여 제기된 항소는 허가될 수 있다. 그리 나 본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 지방법원은 본건 정정보도문은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의 실제적인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이다. 본건정정보도문의 제 7 항은 공표되어 게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전부의 정정보도문에 대한 게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첫번째 보도의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정정보도문의 제 7 항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첫번째 보도문의 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D 에 있어서의 부정확한 결제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D 업주도 역시 그의 기업이 채무초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업을 중지하여야만 하였다고, W 는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제 7 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D 업주들의 기업은 채무초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은 D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문구의 정정보도문을 읽어 보면, 첫번째 보도가 정정보도문중에 부당하게 인용되어 있고 그 결과 평균적인 독자들에게 대해서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해 줄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줄 염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제 1심의 판결은 정확하게 위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 첫번째 기사는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삼자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 편집자 자신의 진술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W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라고 문자 그대로 인용된 진술의 다음에는 바로 접속법의 형식으로 쓰여진 두 번째의 문장이 계속되고 있는 바, 위 문장은 그 전체 문장의 첫번째 부분과의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의 독자들에게 해해서 W 파산관재인인의 개입의 계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 문장의 다음에 바로 이어서 「L은 그러나 전해 다른 의견이었다」 라는 기재가 대비되어 있었더라면, 독자들에게 대하여, 첫번째 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기사의 나머지 내용이, 피신청인은 파산관재인 W의 견해와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보더라도, 이로써 파산관재인인의 견해가 정정보도문에 있어서 편집자 자신의 주장으로 취급되어도 좋다는 의미에서, 피신청인이 파산관재인인의 견해를 자기의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편집인이 제 3자의 의견을 자기 자신의 진술의 중요부분으로 하였을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항소인의 견해와 같이 통상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피신청인이 W의 견해를 사실상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 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파산관재인 W의 주장을 공표하였고, 따라서 그는 이에 관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지방법원이 그 상세한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본건 정정보도는 그것이 피신청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용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정정보도문을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인의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삼자의 진술을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용한 인용문의 경우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언론사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편집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으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해두지 아니하면, 독자들은 그 의사표시를 본래 누가 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편집인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진술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또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첫번째 보도의 인용은 통설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Seitz-Schmidt-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Rdz. 150;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2 Aufl., S. 363; OLG Dusseldorf, A f P 78.194; Urteil des Senats, ArchPR 73(XVIII) , 110 참조)

3. 제 1 심의 판결은, 앞서의 6 개항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히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의 다른 어법들(즉 그들은 ...이라고 인용했다; 그들은 ...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라고 기술했다) 은 정정보도문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정정보도문이 일부는 피신청인 자신의 주장에 관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제삼자의 주장의 인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데에 족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제 7 항은 「그들은 나아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라는 도입부를 가지고 시작되어 있었다.

앞선 제 6 항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는 도입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독자들은 그 정정보도문을 읽고 그 제 7 항이 피신청인 자신의 주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라는 도입부가, 그것이 사용된 항목자체에서 조차 편집자의 주장을 게재하고 있고 또한 이와는 전연 별도로 그 용어의 용법으로부터 보아도 그것이 제삼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작용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인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그렇지 않아도 본래 부주의한 독자들이 제 7 항의 피신청인 자신의 주장을 암시하는 도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첫번째 보도의 그 다음 인용문에서 어느 한 부분에 접속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한가지 사정 만으로부터 이러한 거의 눈에 띄기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우연한 문장의 작법이 아니고, 그 정정보도문이 첫번째 기사에 인용된 제삼자의 주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의도된 수법이었다고 추리해 낼 수 있을까는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독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암시는 독자들이 접속법의 사용을 알아차리고 있는 경우에 조차도 결코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접속법의 사용은, 정정보도문을 작성한 사람이 첫번째 보도를 인용하였을 당시에 이미 그 보도와는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이라고도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접속법을 포함하고 있는 위 문장이 전항에서 마찬가지로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전체적인 관계에서 제삼자의 진술을 특징 지우는 것이라는 사정은 독자들이 정정보도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독자들에게는 당연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들은 그들의 기억력을 더듬는다 하더라도 그 정정보도문에 대하여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